

 신안산대학교	규정심의위원회 규정	규정 번호 4-1-28 제정 일자 2006.04.10 개정 일자 2024.8.19 책임부서/팀·계 기획처
---	-------------------	---

제1조(명칭 및 근거)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 규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. <2019.11.14. 개정>

제2조(설치목적) 위원회는 총장 직속기구로서 대학 행정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, 개폐 등을 심의함을 목적으로 한다. <2019.11.14. 개정>

제3조(구성) 위원회는 위원장과 직원 1인 이상(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신안산대학교 지부의 조합원)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한다. <개정 2019.3.4., 2019.11.14., 2024.8.19.>

제4조(위원장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한다. <2019.11.14. 개정> <2021.08.20. 개정>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.

제5조(위원)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<2019.11.14. 개정>

제6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 <2019.11.14. 개정>

- ①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- ② 미정리된 규정의 정리 및 편찬에 관한 사항
- ③ 규정조문의 해석에 관한 사항
- ④ 규정연구를 위한 자료의 수집과 정리에 관한 사항
- ⑤ 기타 이 위원회의 목적 수행과 관련하여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7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,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회의를 주재한다.

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에 대한 사항을 의결한다.

④ 의장은 가부동수인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.

제8조(사무처리기능) ① 위원회의 사무는 신안산대학교 기획처에서 담당하고, 사무처리를 위해 1명의 간사를 둔다. <2021.08.20. 개정>

②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안산대학교의 교직원으로 특별작업팀을 구성, 운영할 수 있다.

③ 제규정의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. <2006.5.1 신설>

제9조(보고)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0조(세부사항) 이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.